

대학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Desirable Legal Structure and Policy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of Inventions at the Universities

정상기*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기준연구에 대한 개관 및 개념의 정의 | V. 결론 및 정책제언 |
| III. 자료의 조사 및 분류 | |

〈Abstract〉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present a cornerstone for a desirable legal structure in the area of the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university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long run,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basic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for the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a desirable legal institution, in particular, includ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the follow-ups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speciality.

Key words : government-funded research resul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Center, intellectual property, invention at the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 한남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e-mail : chungsk@eve.hannam.ac.kr)

I. 머리글

대학연구성과의 상당부분은 국가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산업화·실용화에 이르지 못한 채, 방치 또는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대학의 연구재원을 지원 및 관리하는 소관부처들은, 후술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연구성과의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제정·시행하고는 있으나, 연구성과의 활용 내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정책 및 실용화·산업화정책을 입법화한 가장 모범적인 예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80년 12월, “대학 및 소기업특허절차법”(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 Act: 일명 Bayh-Dole Act)를 제정하여,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을 국고에 귀속시키던 종래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소속대학에 귀속시키는 ‘私權化政策’으로 전환한 이래,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의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이 급속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의 제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정부지원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법규의 현실을 고찰한 후(II. 정부지원연구성과의 기술이전 관련법규),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학 및 과학기술계의 현실에 비추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II. 대학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II. 정부지원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관련법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정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일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몇몇 개별법의 단편적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부처들이 소관 연구지원사업에 따른 연구성과의 처리·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훈령 또는 고시 등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법규들이 연구주체가 대학인 경우 대학의 특성 내지 독자성을 감안한 상이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1. 개별법의 관련규정

1) 특허법

정부지원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다.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공립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에 의한 정부지원 연구성과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속하기 때문이다.

원래 일반적 의미의 직무발명에¹⁾ 대한 특허권은 그 발명자에게 부여되고 사용자 등은 통상 실시권만을 갖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이지만,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²⁾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9조 제①항.

2) 위의 법, 제40조 제③항.

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³⁾

2) 기술개발촉진법

(1) 국유산업재산권의 양여 등의 특례

기술개발촉진법은 “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한 산업소유권 중 … 당해 용역의 수행자 또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소유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⁴⁾ 정부 지원 연구성과의 산업재산권을 국가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당해 연구개발수행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2) 결과물의 활용과 기술료의 징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③항에 따르면, ‘특정연구개발사업’⁵⁾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그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특허출원비용의 보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국산신기술 제품”⁶⁾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원내용의 하나로서 국산신기술제품을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⁷⁾

3) 공업발전법

공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은 동법 제13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⁸⁾ 개발성과의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성과의 활용촉진과 기술료의 용도 등에 관한 단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그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징수된 기술료는 i) 당해 개발사업 책임자의 개발능률향상, ii) 개발사업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⁹⁾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의 실용화 촉진, 개발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¹⁰⁾

3) 위의 법, 제39조 제②항 및 제④항.

4) 우리나라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제③항.

5)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에 의거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국산신기술제품”이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법 제2조 제3호.

7) 위의 법 시행령, 제9조 제7호.

8)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분야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 개발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기업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http://www.itep.re.kr/index_intro.html>(1998. 12. 2 조회).

9) 우리나라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 및 제④항.

10) 위의 시행령, 제13조.

2. 연구개발사업 주무부처의 내규

1)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제정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은 그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저작권·시작품 등 가운데 정부출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연구성과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출연금액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참여기업, 연구성과의 실시기업 기타 적정한 기관에 산업체재산권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¹¹⁾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활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이 참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2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에 따른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업을 1년 이상 휴지 또는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기업이 아닌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¹²⁾

(3) 기술료

(가) 기술료의 징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기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출연금액 이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¹³⁾

(나) 기술료의 감면(중소기업의 우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때에는 그 기술료 가운데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¹⁴⁾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정되는 것으로 강행 규정으로 해석된다.

(다)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가운데 정부출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i)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연구인센티브, ii) 연구개발재투자, iii)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기금 지원, iv) 산업체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직접경비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

11)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82년 6.2 제정(과학기술처 훈령 제473호)), 제43조.

12) 위의 규정, 제38조.

13) 위의 규정, 제39조 제①항.

14) 위의 규정, 제40조 제①항.

및 활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 이상은 ii)의 연구개발재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¹⁵⁾ 한편,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아닌 때에는 징수된 기술료 가운데 정부출연금액의 50% 상당액 이상을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에¹⁶⁾ 납부하여야 한다.¹⁷⁾

2)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연구개발성과의 지적재산권 관련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1)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비 부담자가 그 부담금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 이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관리전담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¹⁸⁾ 소유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인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며, 공동연구협약

에 따라 참여연구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¹⁹⁾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 주관연구기관 등의 책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활용성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²⁰⁾, 연구성과의 공개,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실시계약의 체결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될 것이다.

(나) 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는 그 성과의 지적재산권자와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당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²¹⁾

(다) 제재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사업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시기관이 협의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활용을 위한

15) 위의 규정, 제41조 제①항.

16) 이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전문기관을 말한다.

17) 위의 규정, 제41조 제②항.

18)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19)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1998.8.7 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8-100호), 제36조 제①항.

20) 위의 규정, 제37조 제①항

21) 위의 규정, 제37조 제②항

사업을 1년 이상 중지 또는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²²⁾

(3) 기술료

(가) 기술료의 징수 및 적립

연구개발성과의 지적재산권자는 그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기술료 징수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²³⁾ 한편 관리기관이 아닌 지적재산권자가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액의 50% 이상을 관리기관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²⁴⁾

(나) 기술료의 감면 등

지적재산권자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활용성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의 출연자가 자기사용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재산권자로 하여금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²⁵⁾

(다) 기술료의 사용

관리기관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자는 적립된 기술료를 i)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

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ii) 당해 연구기관의 정보통신 기초·기반기술 연구 및 iii) 당해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기관은 i) 정보통신관련 기초·기반기술연구를 위한 재원의 조성, ii)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iii)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iv)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²⁶⁾

(4) 기술이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은 참여기업이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이전에 따라 실제경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은 이를 적립하여 기술료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²⁷⁾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²⁸⁾

3)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기초과학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22) 위의 규정, 제37조 제⑦항.

23) 위의 규정, 제38조 제①항.

24) 위의 규정, 제39조 제①항.

25) 위의 규정, 제38조 제②항 및 제③항.

26) 위의 규정, 제39조.

27) 위의 규정, 제40조.

28) 위의 규정, 제40조의 2.

의 훈령으로 제정된²⁹⁾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그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민간공동연구자의 우선실시권, 기술료,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1)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연구성과의 산업체재산권 또는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유한다.³⁰⁾ 다만 협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귀속을 정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 등이 공동부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한 때에는 그 연구와 관련된 산업체재산권 등의 제권리는 주관연구기관과 그 민간기업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민간기업은 그 연구성과의 우선적 실시권을 보유한다.³¹⁾

(2) 연구성과의 활용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기술이전 및 기술의 실용화 등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한국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은 연구개발성과의 DB 구축 등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²⁾

(3) 기술료의 용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i)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인센티브, ii)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재투자, iii)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의 기금 조성 및 iv) 산업체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직접경비 및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iii)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료 수입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³⁾

III. 대학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1. 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부처들이 마련해놓은 이상의 규정은 대학 이외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 등 그 연구주체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연구분야에 있어서 응용과학연구 내지 실용화기술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로 순수과학 내지 기초과학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연구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대학연구성과의 기술이전정책은 지적재산권 정책 및 기술이전정책 이외에 기초과학지식의 ‘社會的 公有’를 위한 정책, 대학의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이 별도로 요구된다.

2. 지적재산권의 귀속

1) 문제의 소재

1968년 미국의 “Harbridge House”가 제출

29) 1994. 1. 8. 과학기술처훈령 제377호.

30)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입법적 오류라고 할 것이다. 주관연구기관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31)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32조.

32) 위의 규정, 제30조.

33) 위의 규정, 제31조 제①항.

한 보고서³⁴⁾에 따르면, 연방지원 연구성과 가운데 1957년과 1962년에 특허된 발명의 경우 그 연구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한 경우의 23.8%가 상업화된 반면에 정부가 그 권리를 보유한 경우는 불과 13.3%만이 상업화되었다고 한다.³⁵⁾ 또 다른 보고는 1970년의 경우 정부 보유특허권의 이용허락율은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³⁶⁾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유화함으로써 오히려 연구성과의 사장 내지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입법정책의 방향

(1) 특허권의 귀속

(가) 권리의 귀속주체

연구성과의 사장 내지 공유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성과의 특허권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대학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구자와 그 소속 기관과의 권리관계가 문제될 것이나 이는 현행 특허법상 직무발명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³⁷⁾

(나) 권리의 제한

독점배타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특허권을 특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연구성과에 따른 과학기술정보의 사회적 공유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원연구성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안에서는 그 권리 자체를 국유로 하거나 또는 독점배타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국가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이³⁸⁾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실시권은 국가적·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2) 저작권의 귀속

(가) 권리의 귀속

저작권은 창작활동을 직접 수행한 자연인에게 주어짐이 원칙이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국가 또는 대학에 소속된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국가 또는 대학의 명의의 공표된 것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국가 또는 대학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실제 창작자의 명의로 공표된 때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생각컨대, 현실적으로 연구성과가 그 연구자

34) Harbridge House, "Government Patent Policy Study, Final Report for the FCST Committee on Government Patent Policy," Vol. I-IV (1968).

35) Harbridge House Report, Vol. IV, p. 18.

36) Steve L. Bertha,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in U.S. Research Universities," 36 IDEA: J. L. & Tech. 513 (1996), p. 526.

37)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며,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친다. 다만 근무규칙 등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받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9조.

38) 강제실시권제도는 우리 특허법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특허발명이 ①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③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④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구하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7조 제①항).

39)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의 명의가 누락된 채 공표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의 저작권이 그 소속대학 또는 국가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될 가능성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2조 내지 제34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성과에 따른 기초과학정보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사유 이외에, 연구성과의 "full text"의 게재 및 그 이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제한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정보DB의 구축 및 그 이용에 따른 저작권침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성과의 실용화

1) 문제의 소재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성과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목적에 부등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공개를 통한 기초과학지식의 사회적 공유,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특허권 등 산업체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성과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입법정책의 방향

(1) 기초과학지식의 공개

(가) 연구결과발표의 의무화

대학연구성과의 상당부분이 응용 및 개발연구

의 기반을 이루는 글자 그대로 '기초과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공공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공개가 요구되는 바, 이는 한편으로 중복투자 내지 중복연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가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특허요건의 하나인 '新規性'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정보의 관리 및 접근체계의 정비

대학연구성과의 공개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연구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학술지에의 게재 등 어떠한 형태에 의하건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공개의무를 새로이 부과할 실익은 크지 아니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된 정보의 관리 및 정보접근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술의 상업화

(가) 기술이전

미국의 경우 공공재원에서 비롯한 연구성과를 민간부문으로 기술이전하는 일은 연구개발주체의 필수적 의무사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⁴⁰⁾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학보유기술의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소속대학에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키는 입법이 마련되는 경우, 기술이전의 촉진 및 장려를 위한 근거 규정의 도입은 필연적인 수순이라 할 것이다.

40) Kevin W. McCabe, "Implications of the CellPro Determination on Inventions Made with Federal Assistance: Will the Government Ever Exercise Its March-in Right?," 27 Public Contract Law Journal 645 (Spring, 1998), p. 651.

(4) 자체실용화

대학 또는 교수가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대학의 윤리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또는 교수는 그 보유기술에 관한 한 가장 정통한 자이므로 보유기술의 실용화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스스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일정지분을 가지고 민간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권리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의 지원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그 관리를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 결과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을 대학에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권리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적어도 특허출원비용(출원심사비, 변리사 선임비, 각종 수수료 등)과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특허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특허료 등의 재정적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적재산권관리센타

1) 문제의 제기

하나의 창작물이 권리로서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또한 실용화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대체로 법적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권리의 취득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거나, 설사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용화 내지 사후관리에 실패하여 결국 연구성과를 사장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한, 그 권리를 특정단체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 제78조는 이른바 “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현재 이를 근거로 다수의 신탁관리단체가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⁴¹⁾ 그러나 특허권 등의 산업체재산권의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관련규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연구성과의 특허권을 대학 또는 연구자에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제도적 정비가 없는 한, 그 관리는 대학 또는 개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입법 및 정책의 방향

(1) “지적재산권관리센타”的 설치

“지적재산권관리센타”는 대학 또는 연구수행자를 대신하여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연구자에게는 지속적 연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대학의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등의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집중관리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므로 기술의 확산 내지 실용화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명의 현실 및 관리경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전국적 규모의 단일한 지적재산권관리센타의 설치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2) 지적재산권관리센타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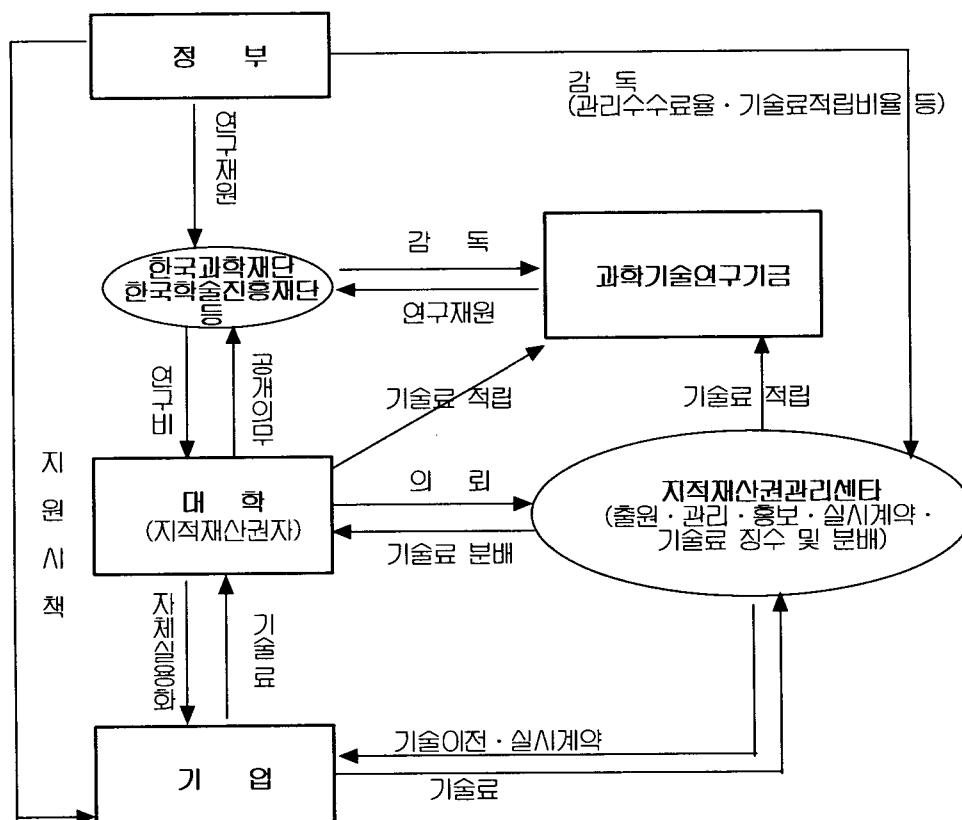
41) 여기에서 신탁관리라 함은 저작권자가 그의 권리를 관리단체에게 신탁하여 일체의 관리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한 음악저작권의 집중관리방식이 그 대표적 예에 속한다.

(가) 본래적 기능

지적재산권의 취득, 사후관리, 이용계약의 체결, 사용료(기술료)의 징수와 분배,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권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대행한다. 특히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발명의 평가, 특히 등의 출원, 권리의 사후관리, 발명의 홍보, 실시계약의 체결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상, 발명의 상업화를 위한 신생기업의 설립 또는 참여,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나) 과학기술정보유통센타

과학지식의 확산, 기초과학기술의 응용·개발



<그림 1> 지적재산권관리센타의 흐름도

42) 발명 등의 기술과 저작물의 명칭(제호), 개요, 발명자 또는 저작자, 식별번호 등이 수록된 DB를 말한다.

43) 기술 또는 저작물에 대한 현재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그 식별번호 등이 수록된 DB를 말한다.

44) 각각의 기술 또는 저작물의 사용조건에 관한 것으로 그 사용대가, 사용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와 의무, 약관이나 표준계약서 등이 수록된 DB를 말한다.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그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학술적, 기술적, 공학적 정보를 “국립기술정보청”(the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NTIS)에 이전하게 하고 NTIS는 이를 대학, 민간부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연방연구개발성과의 광범위한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컨대, 과학기술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저작물정보DB,⁴²⁾ 권리자정보DB,⁴³⁾ 권리관리정보DB⁴⁴⁾ 등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일은 아마도 지적재산권

관리센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원화하고, 기술이전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사용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징수와 분배 등을 하나의 조직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d) 과학기술연구기금의 조성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따른 기술료 수입 가운데 적어도 해당 연구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연구비 상당액을 가칭 '과학기술연구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관리센타는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하여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게 되는 바, 이러한 기술료 수입 가운데 일정비율의 금액을, 적어도 해당 연구과제를 위하여 지원된 연구비액에 이를 때까지, 연차적으로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3) 지적재산권관리센타의 규제

(a) 법적 성격

지적재산권관리센타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이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되며 궁극적으로 기술이전의 촉진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특허법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지원 및 감독

지적재산권관리센타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과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특

히 관리의 대가로 권리자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의 요율, 기술이전 내지 실용화에 따른 기술료의 비율, '과학기술연구기금'의 조성을 위한 적립액의 규모 등은 이해당사자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 바, 私的自治의 原則에 방임하기보다는 주무관청의 認可事項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사후 관리는 크게 (1)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 (2)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3) 연구개발정보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로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부처가 각기 나름대로 연구성과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이러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더구나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에 관한 한, 소관행정부처, 연구지원기관 및 연구자소속기관 모두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관행을 보면, 연구수행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수행자의 권리로 간주되어 지기도 하고, 혹은 公知의 技術로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저 한 권의 연구보고서 자체로 수명을 다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연구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귀속시키는 입법적 해결, 즉 ‘私權化政策’을 통하여 ‘공유의 비극’ 내지 연구성과의 사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재원(연구개발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 관련업무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에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담기구, 즉 “지적재산권관리센타”(가칭)의 설립을 제안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평가, 특허의 출원, 발명의 홍보, 기술이전, 실시계약의 체결, 기술료의 징수와 분배, 권리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의 강구, 기초과학정보·지식의 확산 등의 기능을 지적재산권관리센타가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투자되는 연구재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익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장치의 하나로서 “대학과학기술연구기금”的 조성을 들 수 있다. 이 기금은 과학기술의 산업화·실용화에 따른 대가로 얻어지는 대학의 기술료 수입 가운데 일정비율을 적어도 지원받은 연구비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으로 기탁하게 함으로써 조성이 가능하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오직 대학에서의 과학기술연구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과학지식·정보의 확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정책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는 기초과학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응용 및 개발연구의 기반을 확대·강화시키는 동시에 기초과학기술의 산업화·실용화의 전단계로서 일종의 홍보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바, 전술한 “지적재산권관리센타”가 이러한 “과

학기술정보유통센타”的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私權化政策은 자칫 실용화의 가능성에 떨어지는 순수기초과학에 관한 연구보다는 응용 또는 개발연구에 치중함으로써 기초과학의 저변을 부실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또한 기술료 수입의 극대화에 급급함으로써 지식의 연구·교육·확산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등 역기능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게 하며, 연구과제선정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술료 수입을 대학의 일반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학의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박동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정책연구97-28, 1997.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연구자료」 24, 1996. 12.
- 정상기 외 9인 공저,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1996.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1996.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 통계연보」, 1997.
- 한국과학재단, 「핵심전문연구지원사업 선정평가보고서」, 1997. 6.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1998. 2.
- Derek Bok, "President's Report: Business & the Academy", *Harv. Mag.*, May-June, 1981.
- Edward C. Walterscheid, "The Need for A Uniform Government Patent Policy: The

- DOE Example", *Harv. J. L. & Tech.*, Vol. 3, 1990.
- Harbridge House, "Government Patent Policy Study, Final Report for the FCST Committee on Government Patent Policy," Vol. I-IV, 1968.
- Kenneth Sutherlin Dueker, "Biobusiness on Campus: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Developed Biomedical Technologies," 52 *Food & Drug L.J.* 453, 1997.
- Kevin W. McCabe, "Implications of the CellPro Determination on Inventions Made with Federal Assistance: Will the Government Ever Exercise Its March-in Right?," 27 *Public Contract Law Journal* 645, Spring, 1998.
- Lita Nelsen, "The Lifeblood of Biotechnology: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in The Business of Biotechnology: From the Bench to the Street", *R. Dana Ono ed.*, 1991.
- Niels Remers, "Tiger by the Tail", 7 *J. Ass'n U. Tech. Managers* 1, 1995.
- Rebecca S. Eisinger, "Public Research And Private Development: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i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82 *VA. L. R* 1663, November, 1996.
- Richard A. Knox, "Medical School Adopts Tighter Conflict Policy", *Boston Globe* (Mar. 24, 1990).
- Steve L. Bertha,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in U.S. Research Universities," 36 *IDEA: J. L. & Tech.* 513, 1996.
- Sunil R. Kulkarni, "All Professors Create Equally: Why Faculty Should Have Compete Control O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ir Creations," 47 *Hastings L.J.* 221, November, 1995.